

14世紀 麗明關係와 濟州島의 歸屬 過程^{*}

林常薰^{**}

- I. 들어가며
- II. 공민왕과 홍무제의 제주도 문제 교섭
- III. 냉각하는 여명관계와 제주도 토벌
- IV. 우왕대 여명관계의 회복과 제주도 귀속 확정
- V. 나오며

국문초록

충렬왕대 고려는 제주도의 지배권을 원에게 빼앗겼다. 이후 충렬왕은 지속적인 원과의 교섭으로 ‘행정=고려’, ‘마필=원’이라는 형식으로 제주도의 관할권을 일부 되찾아왔다. 원말 공민왕은 반원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고려의 고토 수복에 중점을 두었고, 북진과 함께 제주도의 귀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생국 명이 건국되자 공민왕은 제주도의 소유권을 두고 홍무제와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였다. 공민왕은 먼저 제주도 문제를 홍무제에게 제안하였고, 충렬왕대의 교섭 결과와 같이 제주의 소유권은 고려에 있고, 대신 말만 때때로 명에 진헌하는 형식으로 굳어졌다. 공민왕 말년과 우왕 초기부터 발생한 공민왕 시해, 명사 살해 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여명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우왕 중기 이후 여명관계가 개선되자 홍무제는 다시 한 번 제주도의 고려 소유권을 확정하였고, 이는 그 뒤를 이은 조선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제주도 소유권의 교섭 과정과 말진헌 등을 중심으로 이 시기 복잡다단했던 한중관계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과제번호 20180603).

** 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mc819@hanmail.net

주제어: 고려, 명, 제주도, 말, 여명관계, 공민왕, 홍무제

I. 들어가며

14세기 동아시아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 대륙에서는 元과 明의 교체가 일어나고, 곧이어 한반도에서도 高麗를 대신해 朝鮮이 들어섰던 것이다. 대륙의 元明交替와 새로운 천하질서의 구축과 고려 및 조선의 대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약 반 세기에 걸친 한중 양국의 외교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고 치열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점차로 확정되어간 한중관계는 명의 멸망까지 조선에 그대로 이어지는 등 조선의 對明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학계에서도 이 시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고려와 원·명, 혹은 조선과 명의 전반적인 관계에 집중한 연구부터 세세하게 교역을 통해 당시 한중 관계를 고찰했던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기 한중관계를 조명했다.¹⁾

이 시기 濟州島²⁾는 한중 양국의 또 다른 외교의 각축장이었다. 주지

1) 국내의 연구로는 강상운, 「여명(한중) 국제관계연구」, 『중앙대 논문집』 중앙대학교, 1959;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황운룡,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관계변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14, 1980; 김성준, 「고려와 원·명관계」, 『한국사』 8, 1981; 황원구,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한국사의 재조명』, 민성사, 1986; 김순자,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 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중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등의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외국의 연구로도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景響」, 『綏化學院學報』 1, 1997; 薛瑩,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朝關係略論」, 『社會科學戰線』 4, 1997; 刁書仁,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 『揚州大學學報』 8-1, 2004; 姜龍范·劉子敏, 「明太祖在位時大明與高麗的關係」, 『延邊大學學報』 2, 1998;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27-4, 1969 등이 있다.

2) 현재의 濟州島는 과거 독립국 耽羅로 존재하던 중 고려 중기 이후 고려의 지

하는 바와 같이 원 世祖 이후 몽골은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며 상당수 몽골인의 이주와 함께 대규모의 말 사육장을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 세조 사후 고려 忠烈王 대부터 시작했던 고려의 제주도 귀속 노력은 원 말 恭愍王 대에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공민왕은 反元을 내세우며³⁾ 고려의 고토 수복에 주력하였고, 고려는 北進과 함께 제주도의 귀속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명의 건국 이후, 원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洪武帝⁴⁾는 특히 제주도의 말에 눈독을 들여 고려의 완전한 제주도 귀속 노력은 난항에 부딪혔다. 즉, 명초 홍무제는 명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대한 고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듯하나, 北元과 納哈出 등 그 잔존세력들이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홍무제에게 軍馬의 보급은 필수였고, 이런 와중에 과거 원이 전략적으로 제주도를 말 사육장으로 삼았으며, 현재도 良馬가 많다는 사실에 홍무제가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⁵⁾ 이후 고려는 홍무제와 수차례 제주도의 완전한 귀속에 관한 교섭을 하였고, 禡王 대에 이

방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1168년 탐라에서 발생했던 ‘良守의 亂’은 여타 반란과 같이 신분적 갈등으로 촉발된 것이 아닌 탐라가 고려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역학관계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았다(전영준, 「고려의 탐라 수탈과 良守의 亂」, 『역사와 교육』 25, 2017, 111-140쪽). 고려 복속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탐라의 강한 정체성 때문인지 본문에서 논하는 14세기에도 ‘耽羅’ 혹은 ‘濟州(島)’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원문의 인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주도’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 3)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탈환 행위는 반원으로 볼 수 있지만, 여타 방면에서 원과 완전히 적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공민왕의 반원에 대한 재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기씨 세력의 견제가 반원의 핵심이었다는 등(최윤정, 「1356년 공민왕의 ‘반원개혁’ 재론」, 『대구사학』 130, 2018, 243-280쪽), 흥미로운 연구가 여럿 보인다.
- 4) 특히 중국의 연구에는 명이 ‘漢族王朝’라는 것을 강조하여, 원과 명의 ‘斷絶’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영락제가 원 세조 쿠빌라이를 모방했다는 연구(宮崎市定, 앞의 논문, 1969)를 비롯해 최근에는 원과 명의 ‘連續’을 강조하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무제가 원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하며 원이 남긴 유산을 모두 받아들일려고 하였다는 연구도 있다.(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 분쟁」, 『역사비평』 121, 2017)
- 5) 임상훈, 「명초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99, 2015. 홍무제는 고려의 공마 강요를 고려에 대한 강압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르러 제주도는 ‘고려 소유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14세기 중후반, 고려와 명 사이에 이루어진 제주도의 귀속과 말 공납 등의 문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제주도는 원말명초의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소 존재하지만⁶⁾, 제주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명과 고려의 교섭 과정 및 영향 등에 관해서는 대부분 당시 한중관계의 한 소소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이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제주도의 고려 귀속 확정 과정과 말 공납 등을 중심으로 당시 한중관계의 一面을 살펴보았다. 본고가 14세기 元明交替와 麗末鮮初 시기 한중관계사 연구의 外延 확장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공민왕과 흥무제의 제주도 문제 교섭

제주도의 소유권을 중국에 빼앗긴 것은 원 간섭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세조 쿠빌라이는 日·宋간 교통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본 정벌과 남송 공략을 위해 제주도를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였다.⁷⁾ 몽골 조정은 三別抄를 진압하고 제주도에 耽羅國監討使를 설치하면서⁸⁾ 약 100년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의 귀속권은 고려와 원 어느 一方의 완전한 장악이 아닌 복잡한 면모를 띤다. 먼저 『新元史·地理志』의 제주도 관련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관련 연구로는 末松保和, 「麗末鮮初における對明關係」, 『靑丘史草』 1, 1965; 김태능, 『제주도사론고』, 세기문화사, 1982;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선사시대부터 조선초까지의 제주도사』, 서귀포문화원, 2007;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 혜안, 2007; 배숙희,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2012;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의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등이 있다.

7) 고창석,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記事의 檢討-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경북사학회』 21, 1998, 446-447쪽.

8) 『高麗史』 卷27, 元宗 14年 閏 6月 丙辰條.

耽羅國招討使 …후에 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바꾸었다. (至元) 21년(忠烈王 10年, 1284) 또 軍民安撫使로 바꾸었다. (至元) 31년(忠烈王 20年, 1294) 고려국에 귀속권을 돌려줬다. 大德 4년(忠烈王 24年, 1298), 다시 耽羅總管府를 설치했다. (大德) 5년(忠烈王 25年, 1299), 軍民萬戶府로 바꾸었다.(이해 고려왕 昀(忠烈王)가 耽羅總管府를 罷하고, 본국에 속하게 하고 萬戶府 설치를 청하였다. … 이에 따랐다.)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충렬왕은 원이 탐라국초토사를 설치하며 직접 지배를 강화하자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귀속을 요구했다. 실제로 충렬왕은 1294년(충렬왕 20·至元 31) 원 세조의 사후 그 뒤를 이은 원 成宗에게 탐라의 귀속을 요구했고, 몽골 조정 역시 이를 승인하여 충렬왕 21년에 고려는 崔瑞를 濟州牧使로 임명하였다.¹⁰⁾ 이렇게 제주도는 고려로 다시 귀속되는 듯 했지만, 위의 기사에서 보다시피 6년 후에 원은 직접 관할을 목적으로 탐라총관부를 설치하면서 제주도는 또 다시 원에 귀속되었다. 이에 충렬왕은 또 다시 제주도의 고려 귀속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수차례의 교섭 끝에 ‘고려에 속하게 하고 만호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것으로 고려가 제주도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행정적인 권한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려가 제주목을 설치한 이후에도 원이 목축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접 관리를 파견했고¹¹⁾ 萬戶 등 관리직의 임면은 여전히 원의 황제가 직접 관장하였다. 더욱이 원의 제주도에 대한 통제력 역시 여타 원의 통치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 조정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세력들이 다양한 이권을 심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원의 세력이 약해진 고려 말, 공민왕은 반원을 천명하며 고려의 고토 회복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는 충렬왕 이후로 상당수의 몽골인, 즉 牧胡들이 이주해온 터라 공민왕의 반원정책 등에 반발하여 몇 차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고려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살해

9) 『新元史』 卷51, 「地理志」6.

10) 『高麗史』 卷31, 忠烈王 21年 閏 4月 癸丑條.

11) 『高麗史』 卷31, 忠烈王 22年 2月 乙丑條.

12) 정동훈, 앞의 『한국중세사연구』 51 논문, 245-246쪽.

당하는 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¹³⁾ 공민왕은 반원과 고토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시기까지 제주도에 대한 고려와 원의 귀속권은 충렬왕 대에 정해진 ‘행정=고려’, ‘마필=원’의 불문율을 따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제주도의 복잡한 귀속 문제는 1368년 명의 건국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공민왕과 홍무제의 첫 번째 제주도 교섭은 1370년(공민왕 19·홍무 3)에 일어났다. 1368년(공민왕 17·洪武 원년) 4월, 명의 사신 俟斯가 고려에 도착해 명의 건국을 알리자 공민왕은 곧장 원의 至正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명에 사신을 보내 원의 몰락과 명의 계승을 인정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親明反元 정책을 펼쳤다.¹⁵⁾ 제주도와 관련하여 고려와 명의 교섭은 1370년(공민왕 19·홍무 3)에 시작하였다. 이 해 공민왕은 명의 冊封과 璽書에 대한 감사로 姜師贊을 명에 出使시켰으며, 이때 원의 金印 반납과 함께 제주도 문제에 대한 表文도 보냈다.

耽羅라는 섬은 즉 고려의 사람들이 개국 이래로 州를 두고 牧으로 삼아왔습니다. 근래 燕(元)과 통한 후부터 前朝(元)의 牧馬가 그 안에 있으나, 물과 풀의 풍요를 이용했을 뿐 封疆은 예전과 같습니다. ... 전조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에서 방목하던 馬匹과 나귀 등은 제주 官吏가 元籍에 근거하여 土人들에게 맡기고 책임지게 하여 때때로 이를 진헌케 하고, 達達 牧子 등 역시 본국(고려)으로 하여금 어루만져 良民으로 삼게 해주옵소서.¹⁶⁾

13) 당시 목호들은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구토수복정책 그리고 명의 마필 요구 등에 반발하여 제주도민을 피어 난에 합류시켰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창석, 「고려조 제주민란의 성격」, 『제주도연구』 3, 1986, 50-51쪽.

14) 공민왕 16년(1367) 2월에 원은 高大悲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원 順帝의 제주도 피난을 언급하며, 제주도를 다시 고려에 예속시킨다는 조서를 내렸다. 이때 공민왕은 제주도와 관련하여 ‘본국이 스스로 牧使와 萬戶를 파견하고, 예전같이 牧胡가 기르던 말을 골라 진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奏請하였고, 이에 순제는 이를 따랐다(『高麗史』 卷41, 恭愍王 16年 2月 癸亥條).

15) 『高麗史』 卷41, 恭愍王 18年 5月 辛丑條; 『高麗史』 卷41, 恭愍王 18年 5月 甲辰條

16) 『高麗史』 卷42, 恭愍王 19年 7月 甲辰條

위의 표문에 나타난 공민왕의 요구 사항을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고려의 개국 이래로 고려의 영토이다. 둘째, 원대 이주한 몽골인을 고려의 양민으로 삼겠다. 셋째, 이 대신 제주도의 말을 때때로 명에 진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충렬왕 대의 교섭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으로 제주도의 행정과 영토, 그리고 주민을 모두 고려에 귀속하고 대신 원 세조 이후 키우던 말만 공납하겠다는 의미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위의 기사는 공민왕이 처음으로 홍무제에게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아마도 원말부터 지속된 고토 수복과 관련하여 신생국 명에 대해 제주도 귀속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을 몰아내고 漢族王朝 명을 세운 홍무제는 스스로가 천명을 받아 원의 뒤를 이은 '正統'이라 자처하며, 원이 남긴 유산은 모두 명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¹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민왕이 이후에 발생한 鐵嶺衛 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¹⁸⁾을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생국 명과의 관계 설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제주도의 소유권 문제를 빨리 확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주도 소유권 문제의 공은 홍무제에게 넘어갔지만, 공민왕의 제주도 문제 제안에 대하여 홍무제가 직접 언급한 자세한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¹⁹⁾ 이를 제외하고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홍무제의 제주도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은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372년(공민왕 21·홍무 5) 7월, 民部尙書 張子溫을 통해 전달한 제주도 토벌 奏請이 명에 도달하고서야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목격할 수 있다. 즉, 홍무제가

17) 정동훈, 앞의 『역사비평』 121 논문, 80-85쪽.

18) 고려 말의 지속적인 북진 정책에 불만을 가진 홍무제는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며, 원이 이 지역을 통치했으니, 마땅히 遼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明太祖實錄』 卷190, 洪武 21年 4月 壬戌條).

19) 다만 홍무 5년(공민왕 21년, 1372) 4월에 공민왕이 홍무제에게 보낸 제주도 토벌 주청의 표문에 당시 홍무제가 '烹鮮之訓'이라 했다는 문구가 보이는 정도이다(『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4月 壬寅條).

제주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장자온에게 피력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홍무제가 말한 바를 명측에서 기록한 『명태조실록』 홍무 5년 7월 庚午條의 내용과 고려측에서 장자온이 돌아온 후 전달한 홍무제의 선유를 기록한 『고려사』 공민왕 21년 9월 壬戌條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다. 물론 황제의 ‘말인 宣諭와 실록에 기록되는 ‘글’은 다를 수 있다. 보통 투박한 말, 즉 白話文을 보기 좋게 文語體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²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고려의 제주도 토벌 주청에 대한 홍무제의 제안에 대한 기록으로 『고려사』에서는 강력한 ‘응장’을 강요하는 반면, 『명태조실록』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굽듯이(如烹小鮮)’ 조심스럽게 ‘설득’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비교하기 『고려사』와 『명태조실록』 상의 원문 내용을 살펴보자.

1. 『明太祖實錄』 洪武 5년 7월 庚午條의 기록

庚午, 高麗王王顥遣其禮部尚書吳季南、民部尚書張子溫等, 奉表、貢馬及方物。表言: “耽羅國恃其險遠, 不奉朝貢及多有蒙古人留居其國, 宜徙之蘭秀山逋逃, 所聚亦恐為寇患, 다1 乞發兵討之。” 上乃賜顥璽書, 曰: “朕聞近悅遠來, 赦罪宥欲, 此古昔王者之道。治大國如烹小鮮, 乃老聃之言, 寬而不急, 斯為美矣。使者至, 賚王表, 陳耽羅事宜, 朕甚惑焉, 因小隙而構成大禍者, 智士君子之所慎。 다2 夫耽羅, 居海之東, 密邇高麗。朕即位之初, 遣使止通王國, 未達耽羅, 且耽羅已屬高麗, 其中生殺, 王已專之。今王以耽羅叢爾之眾, 蘭秀山逋逃之徒, 用朕之詔, 示以威福, 一呼即至, 削去孳生之利, 移胡人於異方, 恐其不可, 蓋人皆樂土, 積有年矣。 가1 元運既終, 耽羅雖有胡人部落, 已聽命於高麗, 又別無相誘之國, 何疑忌之深也? 若傳紙上之言, 或致激變, 深為邊民患, 人情無大小, 急則事生, 況衆多乎? 가2 朕若效前

20) 『명태조실록』에 기록된 홍무제의 말은 사관의 손을 거쳐 상당 부분 다듬어진 文語體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고려사』의 것은 홍무제가 말한 것을 거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인 白話文으로 기록하였다. 『명태조실록』의 기록은 우아한 반면, 『고려사』의 기록은 투박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고려사』에서의 기록은 홍무제의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감정과 생각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무척 높다(陳學霖, 「明太祖致高麗國王的白話聖旨」, 『明史研究論叢(第八輯)-明代詔令文書研究專輯』, 2010, 47-60쪽).

代帝王並吞邊夷，務行勢術，則耽羅之變起於朝夕，豈非因小隙而構大禍者乎？ 가3 王宜熟慮烹鮮之道，審而行之，不但靖女王之境土，而耽羅亦蒙其德矣。如其不然，王尚與文武議之，遣使再來，行之未晚，王其察焉。茲因使還，賚此以示。²¹⁾”

2. 『高麗史』 恭愍王 21년 9월 壬戌條의 기록

壬戌，張子溫吳季南還。帝賜王藥材，親諭子溫等曰：“前年，恁國家爲耽羅牧子的事進將表文來呵。我尋思這耽羅的牧子係元朝達達人，本是牧養爲業，別不會做莊家有。又兼積年生長耽羅樂土過活的人有。更這廝每從前殺了恁國家差去的尹宰相麼，道把這廝每遷將別處住去呵。怕那廝不知國王的好意思，疑惑着別生事端，所以不准來。今番這廝每又怎的如此作亂有。我如今國王根底與將書去有。恁到那裏國王根底備細說者， 나1 休小戲(?)²²⁾他，多多的起將軍馬盡行攔捕者。我聽得恁那地面裏倭賊縱橫劫掠，濱海人民避怕逃竄，不能鎮遏，致使本賊過海前來作耗的上頭，我這裏戒飭沿海守禦官，見獲到前賊船一十三隻有。 다3 若耽羅牧子每與此等賊徒相合一處呵，攔捕的較難有。又聽得女直每在恁地面東北，他每自古豪傑不是分守的人有。恁去國王根底說着用心堤坊者。”…… 又手詔曰：“七月二十五日，張子溫至，表言：耽羅牧子無狀，官吏軍兵沒於非命，深可恨怒。 나2 春秋之法，亂臣賊子人人得而誅。今牧子如此，所當誅討。然國無大小，蜂蠱有毒，縱彼可盡滅，在此亦必有所傷。蓋往者之失，因小事而構大禍惜哉。豈非烹鮮之急，情忌至甚而致然歟事既如是， 나3 王不可因循被侮，其速發兵以討。然事機緩急，王其審圖之。²³⁾”

편의상 『명태조실록』의 기사를 ‘가’, 『고려사』의 기사를 ‘나’, 그 외 특기할 내용은 ‘다’로 분류하여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表1’과 같다.

〈표 1〉제주도 토벌 관련 『명태조실록』과 『고려사』 내용 대조

『明太祖實錄』		『高麗史』	
가1	원의 運이 다했고, 탐라에는 비록 胡人 部落이 있지만, 이미	나1	그들(몽골인)을 가벼이 보지 말고 軍馬를 많이 일으켜 섬멸하고

21) 『明太祖實錄』 卷75, 洪武 5年 7月 庚午條

22) 서울대 소장 목판본 『고려사』에는 顯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 글자는 『康熙字典』 등 여러 字典과 異體字辭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맥상으로 보아 ‘顯(엿볼 처)’을 史官이 誤記한 것으로 여겨진다.

23) 『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9月 壬戌條

	고려의 명을 받들고 있다. 또한 미혹하는 나라도 없는데, 어찌 의심이 깊은가?		체포하라.
가2	짐이 만약 前代(원) 제왕처럼 변방의 오랑캐를 병합하려 한다면, 반드시 勢術을 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탐라의 變은 조만간 일어날 것이니, 어찌 작은 不和로 큰 禍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2	『春秋』의 법도에 亂臣賊子是 누구라도 죽이라 한다. 지금 牧子들이 이리하니 토벌해 죽여야 마땅하다.
가3	왕이 烹鮮의 이치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행하면, 왕의 국토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탐라 역시 그 덕을 입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왕은 여전히 문무백관과 의논하고 다시 사신을 보내와 행해도 늦지 않으니, 왕은 살펴보거라.	나3	왕은 머뭇거리다가 모욕당하지 말고, 신속히 군대를 보내 토벌하라.
다1	(주어 생략) 병사를 일으켜 그것(제주도)을 토벌하기를 바랍니다.		
다2	무릇 탐라는 바다의 동쪽에 있고, 고려에 붙어있다. 짐의 즉위 초기에 사신을 보내 왕국(고려)과 통하였으나, 탐라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더욱이 탐라는 이미 고려에 속하여 그 生殺도 왕이 이미 마음대로 하고 있다.		
다3	만약 탐라의 牧子들이 이런 도적(왜구)들과 하나로 합한다면 섬멸하고 체포하기 비교적 어려울 것이다.		

위의 대조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명태조실록』의 내용은 상당히 유화적인데 반해, 『고려사』의 내용은 대단히 호전적이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末松保和는 사실 두 내용이 거의 일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²⁴⁾, 李新峰은 명대 여러 사료에서 발견한 관련 기사를 들어 『고려사』의 기록이 ‘원래의 모습으로 생동감 있는 듯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⁵⁾ 하지만, 이신봉이 인용한 葉向高의 『四夷考·朝鮮考』·茅瑞征의 『皇明象胥

24) 末松保和, 앞의 논문, 1965.

25) 李新峰, 「恭愍王后期明高丽关系与明蒙战局」, 『韩国学论文集』 7, 1998.

錄』·嚴從簡의 『殊域周咨錄』 등의 사료들은 저자들이 모두 관직에 있으면서 조정의 史草나 『명실록』의 내용을 대폭 참고해 작성한 것들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신봉의 말처럼 『명실록』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명측의 여러 사료에 비슷한 내용만 있는 반면, 『고려사』에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으로 그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착오이다. 또한 정동훈은 이 원인에 대해 홍무제의 말이 통일되지 않았던 탓에 양측의 기록에도 차이가 있었다²⁶⁾고 보고 있는데, 필자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후술하겠다.

위의 기사들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무제가 제주도의 고려 소유권을 인정한 사실이다. '다2'의 내용처럼 홍무제는 공민왕의 제주도 토벌 요청에 제주도는 이미 고려에 속해 있고, 공민왕이 이미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홍무제는 명확히 제주도의 고려 귀속권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이후 명은 고려가 먼저 내건 제주도의 말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고려는 충렬왕대 이후 제주도를 원에 빼앗긴 이후, 여러 차례 교섭에도 완전한 소유권을 얻지 못 했지만, 원명교체 이후 공민왕이 명에게서 제주도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획득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 다음으로 '가2'의 내용에서 홍무제가 군대를 일으키는 것에 반대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1372년(공민왕 21·홍무 5), 공민왕이 장자 온을 통해 전달한 제주도 토벌 주청은 제주도에서 그간 발생했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홍무제에게 보고하고 파병 허가를 받고자 했던 것이 주목적이다.²⁷⁾ 그런데 고려의 제주도 토벌을 위한 주청의 내용 중 핵심인 '다1'의 문장에는 주어가 빠

26) 정동훈, 앞의 논문, 2017, 261-263쪽.

27) 『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4月 壬寅條.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의 빈번한 민란으로 피해가 막심하였으나, 명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대를 일으킬 수 없었다고 한다.

져있었고, 고려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홍무제는 명의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가2’의 내용을 보면 홍무제는 원처럼 명이 군대를 일으킨다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파병할 수 없다고 돌려서 말하고 있다. 실제로 홍무 5년은 아직 內治가 안정되지 않았고, 복원뿐만 아니라 納哈出 등과 같은 원의 遺將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이 같은 내우외환으로 아직 신생국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던 명이 저 바다 건너 이국으로 대규모의 군단을 파병한다는 것은 홍무제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럼 『명태조실록』과는 확연히 다르게 『고려사』의 기록에서는 홍무제가 신속하게 제주도의 몽골인들을 하루 빨리 제압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홍무제의 확실한 의중이 담겨 있는 사료의 부재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 홍무제가 실제로 『명태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대로 말을 했다는 것과 둘째 고려에서 홍무제의 선유를 조작해서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앞서 『고려사』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이신봉의 주장을 반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가 홍무제의 선유를 조작·날조하여 기록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홍무제의 말이 통일되지 않아 각자 다르게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홍무제는 제주도의 몽골인들과 명의 반란세력들이 결탁하여 명의 변경을 소란스럽게 할까 염려했고, 이에 고려의 제주도 토벌을 독려했던 듯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1372년(공민왕 21·홍무 5)은 명이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과 그 유장들이 호시탐탐 중원 회복을 노리고 있던 상황이다. 더욱이 1368년(공민왕 17·홍무 원년)에 일어났던 蘭秀山의 난은 명의 明州府(현 浙江省 寧波)에 큰 피해를 입혔다. 물론 이 난은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그 잔당들이 바다로 도망하여 소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홍무제는 海防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²⁸⁾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홍무제가

난수산의 잔당들이 제주도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²⁹⁾ 홍무제는 ‘다3’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몽골인들과 결탁한다면 명의 변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이 때 고려가 먼저 제주도 토벌을 꺼내자 홍무제는 어찌면 고려의 힘을 빌어 ‘왜구’라는 근심거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에 제주도의 토벌을 독려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제주도 토벌에 관한 홍무제의 생각은 비록 『명태조실록』과 『고려사』에 각각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주도 소유권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고려의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Ⅲ. 냉각하는 여명관계와 제주도 토벌

『명태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이 비록 상반되었더라도, 고려는 결국 홍무제로부터 ‘제주도의 고려 귀속’과 ‘제주도 토벌’이라는 원하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이 이전에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이해 9월 홍무제의 선유를 받은 장자온이 돌아오기에 앞서 5월에 제주도민들이 반란의 주동자들을 살해하고 말을 바치며 항복해 왔던 것이다. 이에 고려 조정은 李夏生을 安撫使로 파견했고³⁰⁾ 이후 『고려사』에서는 제주도의 반란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제주도의 목호가 말과 나귀를 진상하는 등³¹⁾ 고려 조정에 잘 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선 제주도 토벌 주청 건으로 홍무제로부터 제주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고려 조

28) 이 일을 계기로 홍무 4년부터 해금정책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藤田明良,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舟山群島と高麗・日本—」, 『歴史學研究』 698, 1997; 「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と國家, 一四—一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歴史評論』 575, 1998; 檀上寛, 「明代海禁概念の成立とその背景—違禁下海から下海通番へ」, 『東洋史研究』 63, 2004).

29) 藤田明良, 앞의 논문, 1997, 26-27쪽.

30) 『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6月 戊戌條

31) 『高麗史』 卷44, 恭愍王 22年 7月 甲辰條

정에서도 굳이 무리한 원정을 할 필요는 없었는지 제주도 토벌 문제는 잠시 보류되었다.

고려가 제주도 토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374년(공민왕 23년·홍무 7) 7월이었다. 이는 홍무제가 고려와 북원의 통교를 의심하여 고려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도화선이 되었다. 1373년(공민왕 22·홍무 6) 7월, 贊成事 姜仁裕 등이 명에서 돌아오며 전한 홍무제의 선유에 그의 고려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잘 드러나 있다.³²⁾ 홍무제는 장문의 글로 고려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먼저 홍무 5년에 明使 孫內侍가 고려에서 자살한 것부터, 고려 사신의 정탐 의심, 3年 1使 貢馬가 너무 늦다는 등 여러 면에서 고려를 비난하였으며, 심지어 “明州에서 海船 500척, 濶州에서 500척, 泉州·太倉·廣東·四川에서 3개월 내에 7, 8천척의 배를 만들어 정벌할 것”이라며 고려에 군사적인 위협까지 가하였다. 난데없이 홍무제가 이처럼 진노한 이유는 1372년(공민왕 21·홍무 5)에 納哈出가 명의 遼東 군수창고인 牛家莊(현 遼寧省 昌圖鎮)을 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홍무제는 여기에 고려가 나하추에게 군사 기밀을 제공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³³⁾ 홍무제의 비난 중에는 1370년(공민왕 19·홍무 3)에 이루어진 제주도 교섭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즉, 제주도의 행정과 백성들은 고려에 속하지만, 대신 제주도에서 나오는 말은 때때로 명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무제는 “제주의 마필은 오늘 올 것이다, 내일 올 것이다하며 1년을 떠들어댔는데 말 4마리만 왔다”라며 강력하게 불만을 쏟아내고, 급기야는 1374년(공민왕 23·홍무 7)에는 禮部主事 林密 등을 파견하여 ‘好馬’ 2000필을 골라서 보내라고

32) 『高麗史』卷44, 恭愍王 22年 7月 壬子條

33) 홍무 5년은 嶺北之戰이라는 불리는 북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가 크게 실패했던 시기였고, 納哈出의 牛家莊 기습 역시 그해 겨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거듭되는 패전에 홍무제가 극도로 분노하고 예민해졌음은 당연할 것이다. 이때 遼東都司 등을 통해 고려와 북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오던 홍무제는 이들이 서로 교류한다고 확신하며 패전의 책임에 고려와 북원의 내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임상훈, 앞의 논문, 2015, 158-160쪽).

하기에 이르렀다.³⁴⁾

〈표 2〉 공민왕대 대명 進馬³⁵⁾

時期	明의 要求 數量	高麗의 進馬 數量	備考
洪武 5年 恭愍王 21年 1372	3月	?	『명태조실록』에서는 “방물을 진공하였다(貢方物)”, 『고려사』에서 역시 “말을 진헌하였다(獻馬)”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수량은 알 수 없다.(『明太祖實錄』卷73, 洪武 5年 3月; 『高麗史』卷43, 恭愍王 21年 3月 甲寅條)
	4月	?	6
	8月	?	17
	11月	?	50
洪武 6年 恭愍王 22年 1373	6月	?	『명태조실록』에서는 “방물을 진공하였다(貢方物)”, 『고려사』에서 역시 “다시 말을 진공하였다(復貢馬)”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수량은 알 수 없다.(『明太祖實錄』卷86, 洪武 6年 12月 丙寅條; 『高麗史』卷44, 恭愍王 22年 6月 辛卯條)
	7月	?	말 19 나귀 2
	10月	?	원래 말 24필, 노새 2필을 진공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으나, 靈光 慈恩島에서 배가 침몰하여 進貢하려던 말은 물론 당시 正使였던 周英贊 등이 익사하여 일부만 생존하였다.(『高麗史』卷44, 恭愍王 22年 10月 乙酉條)
洪武 7年 恭愍王 23年 1374	4月	2,000	9월 甲子, 密直副使 金義가 貢馬 300필을 호송하나 12월에 명의 孳牧大使 蔡斌 살해하고 북원으로 도주하여, 공마 300필도 북원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 9월 甲申 공민왕 시해.

34)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4月 戊申條 흥무제가 갑작스럽게 많은 수의 말을 강요한 것에는 고려에 대한 ‘징벌’이라는 성격이 강하다(임상훈, 앞의 논문, 2015).

35) 임상훈, 앞의 논문, 2015, 149-151쪽에서 인용.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그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민왕은 홍무제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진헌했다. 말이 명 조정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홍무제가 고려와 북원의 통교를 의심하여 陸路를 통한 조공을 금지하고, 海路로만 오기를 고집하였던 것이 있다. 위의 1373년(공민왕 22·홍무 6) 10월 기사와 같이 무리하게 배를 타고 가다가 말뿐만 아니라 사신단이 익사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홍무제의 이와 같은 강요에 고려는 그해 7월 門下評理 韓邦彥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말을 가져오게 하였지만, 제주도에 도착한 한방언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즉, 제주의 목호 哈赤·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 등이 “우리가 어찌 감히 (元) 세조 황제께서 放畜하시던 말을 명에 보내겠는가”³⁶⁾라며 300필만 보냈던 것이다. 홍무제의 말을 받들어 고려에 온 明使 임밀은 조바심을 내며 “제주 말 2000의 수를 채우지 않으면, 황제(홍무제)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죽이실 겁니다”라며 사정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대답을 못 하고 점차 제주도 토벌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조정은 제주도 토벌에 관해서 이미 홍무제의 허락을 받은 바 있고³⁷⁾ 또한 홍무제가 원하는 말을 목호들이 공납하길 거부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졌던 터라, 다음날 곧바로 門下贊成事 崔瑩을 중심으로 戰船 314척, 精兵 25,605명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토벌에 나섰다.³⁸⁾ 제주도 평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원정을 떠난 지 한 달 남짓 지난 8월에 반란군 대장 3인의 수급과 함께 제주도를 평정했다는 승전보가 고려 조정에 도달했다.³⁹⁾ 이렇게 제주도는 평정되었고, 고려에 확실하게 귀속되는 듯하였으나,⁴⁰⁾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문

36)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7月 乙亥條

37) 『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9月 壬戌條

38)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7月 戊子條; 己丑條

39)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8月 辛酉條

40) 최영의 제주도 평정으로 제주도는 고려 조정의 통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작은 반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禡王 元年(홍무 8년, 1375) 11월에 車玄有 등이 관아를 불사르고 安撫使 林完·牧使 朴允淸·馬畜使 金桂生 등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高麗史』 卷133, 禡王 元年 11月條). 그 다음해인

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평정에 관한 소식을 홍무제에게 전달하여 제주도의 귀속권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미 홍무제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先措置, 後報告’의 형식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외교 악재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IV. 우왕대 여명관계의 회복과 제주도 귀속 확정

상술한 바와 같이 우가장의 피습 이후 홍무제의 고려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1374년(공민왕 23·홍무 7) 9월에 홍무제의 총애를 받던 공민왕이 시해당하고 禡王이 새로이 등극하는 중대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⁴¹⁾ 그해 11월 우왕은 어느 정도 고려 내부를 정리한 후 密直使 장자온과 典工判書 閔伯蒼을 명에 보내 공민왕의 부음을 전하고 시호를 청하며, 자신의 承襲을 요청하였다.⁴²⁾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공민왕이 시해 당하기 직전인 9월에 홍무제의 명으로 고려의 말을 데리러 온 明使 林密과 蔡斌이 귀국하자, 密直副使 金義를 호송관으로 보냈고, 동시에 同知密直司事 장자온을 보내 홍무제가 朝貢道路를 통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표문을 올렸다.⁴³⁾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인 11월에 장자온을 또 다시 명에 사신으로 보낸 것은 고려에서 명에 가는 데만도 2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시공간적으로 정황에 맞지 않다. 이는 아마도 9월에 장자온이 사신으로 떠나자마자 공민왕 시해라는 중대한 사건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명사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장자온이 가지고 갔던 표문은 공민왕

우왕 2년(홍무 9년, 1376)에도 역시 哈赤과 姜伯顔 등 13인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난 일도 발생했다(『高麗史』 卷133, 禡王 2年 5月條).

41)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9월 月 甲申條.

42) 『高麗史』 卷133, 禡王 卽位年 11月條.

43) 『高麗史』 卷44, 恭愍王 23年 9월 月 甲子條.

시해와 관련한 중대사를 기입하는 등 대폭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다. 결국 장자온은 11월에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의 승습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간 고려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정리한 표문을 들고 또 다시 명으로 떠났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앞서 9월에 먼저 홍무제의 명으로 말을 데리고 돌아갔던 明使 채빈과 그 아들을 고려의 호송관 金義가 開州站에서 살해하고, 또 다른 명사 임밀을 포로로 붙잡아 말과 함께 북원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러자 명으로 출발했던 장자온과 민백훤은 또 다시 고려로 도망쳐 귀환했고⁴⁴⁾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의 승습 표문은 또 다시 명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듬해인 1375년(우왕 원년·홍무 8), 1월에야 고려는 비로소 遣判宗簿寺事 崔源을 보내 공민왕의 시해와 왕위 승습을 청하는 표문을 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⁴⁵⁾ 최원은 약 2달 후인 3월에 명에 도달해 고려의 뜻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홍무제는 공민왕 시해라는 중대사가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알리고, 연이어 明使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자 고려에 강한 의심을 품었다. 이에 고려의 시호와 승습 요청에 대한 默殺은 물론 고려 사신 최원을 구금하고 고려에 弔祭使조차 보내지 않는 등 고려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⁴⁶⁾

이후 고려에서는 명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지만, 홍무제는 고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후인 1377년(우왕 3·홍무 10)에야 비로소 홍무제는 고려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 역시 홍무제가 공민왕을 그리워하지만, 공민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면 우왕이 이를 빌어 시역의 흔적을 없앨 것이라 여겨 시호를 내리지 않는다는 등의 고려를 비난하는 내용이며, 앞서 구금되었던 최원은 이제야 풀려났다.⁴⁷⁾

44) 『高麗史』 卷133, 禡王 元年 11月條

45) 『高麗史』 卷133, 禡王 元年 正月條

46) 『明太祖實錄』 卷98, 洪武 8年 3月 丁卯條

47) 『明太祖實錄』 卷111, 洪武 10年 正月 丁未條

1374년(공민왕 23·홍무 7) 7월의 제주도 토벌 이후 고려는 명에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악재에 명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 되면서 제대로 보고를 못 하였다. 즉, 그해 9월의 공민왕 시해, 같은 달 호송관 김의의 명사 살해, 공민왕 시해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다음해 3 월에야 비로소 공민왕 시해를 명에 알리는 등 연이은 외교 악재로 명 이 고려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고려의 제주도 토벌의 對明 보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사료가 보이 지는 않지만, 필자는 1375년(우왕 원년·홍무 8)에 최원이 사신으로 시 호와 승습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릴 때 아마도 같이 보고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홍무제가 공민왕의 시호를 내리고 우왕의 승습을 인정하는 등 다시 정상적으로 외교를 개시하는 것은 약 10년 후의 일로, 밀린 5년 치 조 공을 완납하라는 홍무제의 강요를 해결한 1385년(홍무 18·우왕 11) 7 월이었다.⁴⁸⁾ 이 사이 제주도는 1372년(공민왕 21·홍무 5)의 약속과 같 이 ‘때때로’ 말을 진헌하는 것을 제외하면, 완전하게 고려의 통제에 있 었으며⁴⁹⁾ 명측에서도 별다른 간섭이 없었다. 다만 이전에 자신의 정적 들을 고려에 유배 보냈던 것⁵⁰⁾과 같이 雲南에 남아있던 舊元의 梁王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일 정도가 존재한다.⁵¹⁾

1387년(우왕 13·홍무 20) 5월, 홍무제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으로 고려의 제주도 귀속을 확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명의 京師에 다녀 온 楔長壽가 전달한 홍무제의 선유에 아래의 내용이 등장한다.

48) 『明太祖實錄』 卷170, 洪武 18年 7月 癸亥條

49) 물론 ‘주 38’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도 내에서 몇 차례 반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馬賊’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고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世宗實錄』 卷65, 世宗 16年 8月 壬申條).

50) 홍무제는 이제 막 명을 건국했던 당시, 자신의 政敵 後裔들을 죽인다면 민심을 악화시킬거라 판단하여 陳友諒의 아들 陳理와 明玉珍의 아들 明昇 등을 고려에 유배 보냈다(『高麗史』 卷43, 恭愍王 21年 5月 癸亥條).

51) 『高麗史』 卷134, 禡王 8年 7月條

탐라는 원래 元에 속하여 가져온 말을 나에게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도리어 원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조사하려 했다면, 먼저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내가 만약 조사하려 했다면 또 사람을 보내 관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가서 관리했다면 높고 낮게 또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니, 나는 단호히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탐라는 너(고려)의 땅에서 가까우니 네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며, 나는 그것을 조사하길 원하지 않는다.⁵²⁾

홍무제의 위 발언은 1372년(공민왕 21·홍무 5) 7월에 이루어진 제주도를 둘러싼 최초의 교섭에서 영토와 관리권은 고려가 갖지만, 대신 원의 유산인 말은 때때로 명에 진상한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정지었다. 이번 제주도의 고려 소유권 확정은 14세기의 긴박했던 여명관계 속에서 얻어낸 성과로, 이 이후 중국에서 제주도에 대해 소유권을 언급하는 내용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렇게 고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조선에 완전히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때 제주도를 얻기 위해 명에 양보했던 조건은 명말까지 조선을 움아냈다. 즉, 처음의 담판 결과에서 이루어진 ‘때때로’ 진상했던 제주의 말은 이후 조선에도 이어져 결국 명말까지 거의 매해 種馬 50匹을 진상하는 관례가 되었던 것이다.⁵³⁾ 하지만, 홍무제는 고려와 조선에 상당한 악감정을 가졌고, 철령위 설치와 같이 원이 남긴 유산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면모가 곳곳에 보인다. 만약 공민왕대의 교섭에서 고려측이 제주도의 모든 소유권만을 강조했다면, 홍무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볼 때 천혜의 자연을 가진 寶島 제주도를 얻는 것에 겨우 말 50필이면 매우 값싼 대가가 아니었을까?

52) 『高麗史』 卷136, 禡王 13年 5月條

53) 이때의 종마 50필은 朝貢과 冊封이라는 禮制의 일환으로 해마다 약 50필의 最上級馬를 진헌하던 貢馬로서, 進獻馬, 歲馬라고도 불린다. 예제의 일환이었던 공마는 당시 명의 수도로 진헌되었지만, 우왕 대에 군사·징계용 목적으로 강요했던 말은 軍馬로서 명의 동북부·고려 북부에 위치했던 遼東都司로 진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임상훈, 앞의 논문, 2015, 147쪽).

V. 나오며

본고는 제주도의 고려 귀속 확정 과정과 말 공납 등을 중심으로 당시 한중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본문 내용의 요약과 함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충렬왕대 원 세조에게 제주도를 빼앗긴 이후, 충렬왕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주도를 둘러싸고 고려와 원 사이에는 ‘행정=고려’, ‘마필=원’이라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원말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고려는 고토 수복에 집중하며 북진과 함께 제주도의 귀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을 몰아낸 명이 건국되자 공민왕은 명과 새로이 제주도 문제에 관해 교섭을 시작하였다.

1370년(공민왕 19·홍무 3)에 공민왕은 최초로 명과 제주도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때 내건 조건은 제주도 땅과 백성을 고려에 귀속하지만, 대신 때때로 명에 말을 진헌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홍무제의 답변은 보이지 않는다. 홍무제가 공민왕의 제주도 문제 제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1372년(공민왕 21·홍무 5) 7월에 볼 수 있다. 제주도에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공민왕은 홍무제에게 제주도 토벌 주청을 올렸고, 홍무제는 제주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냈다. 하지만, 홍무제의 제주도 토벌 의견에 대한 『명태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이 완전히 상반된다. 즉, 전자에서는 상당히 유화적으로 ‘실득’을 권유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지극히 호전적으로 ‘응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귀속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고려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374년(공민왕 23·홍무 7) 7월, 홍무제는 갑작스레 고려를 비난하며 2000필의 말 공납을 강요하였다. 그 이유는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 사건에 고려가 복원과 통교했기 때문이라고 홍무제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홍무제의 으름장에 고려는 한방언을 제주도에 보냈으나, 제주도의 목호들이 명에 말을 건네줄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제주도 토벌을 결심하여 한 달 후 토벌을 완수하였다. 고려는 이미 제주도 토

벌의 주청을 올린 바가 있어 제주도 토벌을 사후에 보고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명과의 관계를 급랭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해 9월 공민왕의 시해, 11월 명사의 살해 등 중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의 승습을 요청하는 고려 사신이 제때 명에 갈 수가 없었다. 결국 공민왕 시해 사건으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1375년(우왕 원년·홍무 8) 3월에서야 고려의 사신은 명 조정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홍무제는 우가장 피습 이후 고려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발생한 이 악재들은 그의 고려에 대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홍무제는 고려와의 관계를 단절하기에 이르렀고, 악화일로로 치달던 여명관계는 약 10년 후인 1385년(우왕 11·홍무 18)에서야 비로소 개선되었다. 이 사이 비록 긴장된 여명관계 속에서도 명은 제주도의 귀속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등 제주도는 고려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왔다. 마지막으로 1387년(우왕 13·홍무 20) 5월에 홍무제가 다시 한 번 제주도의 고려 귀속을 확정하면서 충렬왕대 이후로 소유권 논란을 일으켜 왔던 제주도는 완전하게 고려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고의 집필 중에 雲南에 할거하던 舊元 세력 梁王이 제주도로 유배 온 일을 기술한 바 있다. 이 시기 제주도는 원대와 마찬가지로 명대에도 유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⁵⁴⁾ 실제로 홍무제는 1382년(우왕 8·홍무 15)·1389년(창왕 원년·홍무 22)·1392년(공양왕 4·홍무 25)⁵⁵⁾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인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바가 있다. 필자는 본래 명의 제주도 유배 역시 명초 여명관계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

54) 관련 연구로는 배숙희, 「원말·명초의 운남과 고원 후예의 제주 이주」, 『동양사학연구』 119, 2012; S. 출몬,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제주도연구』 48, 2017; 1-26쪽; T. 테무르, 「명초 유배지로서 탐라-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48, 2017, 27-48쪽; 오영주, 「13C말 원대 및 14C말 명초 북방 디아스포라 정착과정과 삶의 모습: 제주 주둔군-이주민과 중국 운남 몽골족의 사례」,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2017, 11-43쪽.

55) 『高麗史』 卷134, 禡王 8年 7月條; 『明太祖實錄』 卷196, 洪武 22年 4月 甲寅條; 『明太祖實錄』 卷215, 洪武 25年 正月 丙申條.

나로 인식하여 본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하였으나, 필자의 미흡한 준비로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해 동학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출현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KCS I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선사시대부터 조선초까지의 제주도사』, 서귀포문화원, 2007.
-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1958.
- 김순자,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 해안, 2007.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태능, 『제주도사론고』, 세기문화사, 1982.
- 정인지 著·북한 사회과학원 譯·신서원 編 『고려사』, 신서원, 2004.

2. 참고논문

- 강상운, 「여명(한중) 국제관계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 1959.
-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고창석, 「고려조 제주민란의 성격」, 『제주도연구』 3, 1986.
- 고창석, 「『元高麗紀事』 耽羅關係 記事의 檢討-13세기 耽羅와 元과의 關係-」, 『경북사학회』 21, 1998.
-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
- 김경록,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조·중관계」, 『세계 속의 한국사』, 태학사, 2009.
- 김성준, 「고려와 원·명관계」, 『한국사』 8, 1981.
- 김순자, 「여말선초 대원·명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배숙희,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2012.
- 배숙희, 「원말·명초의 운남과 고원 후예의 제주 이주」, 『동양사학연구』 119, 2012.
- 오영주, 「13C말 원대 및 14C말 명초 북방 디아스포라 정착과정과 삶의 모습: 제주 주둔군-이주민과 중국 운남 몽골족의 사례」,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2017.

- 윤은숙, 「원말 토곤 테무르 카안의 탐라공진」, 『탐라문화』 53, 2016.
- 임상훈, 「명초 홍무제의 말 강요와 여명관계」, 『중국사연구』 99, 2015.
-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 분쟁」, 『역사비평』 121, 2017.
- 정동훈,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의 제주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 황운룡, 「고려 공민왕대의 대원명관계-관계변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14, 1980.
- 황원구, 「여말선초의 대명관계」, 『한국사의 재조명』, 민성사, 1986.
- 柯劭忞 撰 『新元史』, 上海古籍出版社, 2018.
- 姜龍范·劉子敏, 「明太祖在位時大明與高麗的關係」, 『延邊大學學報』 2, 1998.
- 宮崎市定, 「洪武から永樂へ-初期明朝政權の性格-」, 『東洋史研究』 27-4, 1969.
- 檀上寬, 「明代海禁概念の成立とその背景-違禁下海から下海通番へ」, 『東洋史研究』 63, 2004.
- 藤田明良, 「蘭秀山の亂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舟山群島と高麗・日本-」, 『歴史學研究』 698, 1997.
- 藤田明良, 「東アジアにおける海域と國家, 一四~一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歴史評論』 575, 1998.
- 末松保和, 「麗末鮮初における對明關係」, 『青丘史草』 1, 1965.
- 薛 瑩,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朝關係略論」, 『社會科學單線』 4, 1997.
- 李新峰, 「恭愍王后期明高麗關係與明蒙戰局」, 『韓國學論文集』 7, 1998.
- 刁書仁,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 『揚州大學學報』 8-1, 2004.
-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 『綏化學院學報』 1, 1997.
-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校勘, 『明實錄』, 台灣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68.
- 陈学霖, 「明太祖致高麗國王的白話聖旨」, 『明史研究論叢(第八輯)-明代詔令文書研究專輯』, 2010.
- S. 출몬,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되었던 몽골 귀족」, 『제주도연구』 48, 2017.
- T. 테무르, 「명초 유배지로서 탐라-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48, 2017.

中文摘要

14世紀韓中關係與濟州島歸屬過程

林常薰*

忠烈王時期，高麗臣服于元朝，從此濟州島的管轄權也轉讓給元朝。經過忠烈王的不斷外交交涉，漸漸形成“行政=高麗”，“馬匹=元朝”的局勢。元末，高麗恭愍王提倡親明反元，致力於收復高麗故土。明朝建立后，恭愍王開始與洪武帝交涉濟州島問題，并獲得濟州島的所有權。自恭愍王末年至高麗禑王初期，連續發生恭愍王被弑、殺害明使等外交上的災難，導致明麗關係的惡化。禑王中期以後明麗關係逐漸改善，洪武帝再次確認高麗對濟州島的所有權，并延續至今。本文對明麗之間對濟州島的交涉過程進行研究，并考察了該時期中韓關係的一面。

關鍵詞：高麗，明朝，濟州島，明麗關係，恭愍王，洪武帝

* 順天鄉大學 中國學系 助理教授

ABSTRACT

Korean-Chinese Relations in the 14th century and Recovery Process of Jeju Island

Lim, Sang-hun^{*}

In the reign of King Chung'ryol, Jeju Island was taken by Yuan dynasty. Since then, King Chung'ryol has regained some of the jurisdiction of Jeju Island in the form of 'Administration = Goryo' and 'Horse = Yuan dynasty'. When the new empire Ming dynasty was founded, King Gong'min started a new negotiation with Emperor Hongwu with the ownership of Jeju Island. King Gong'min first proposed the problem of Jeju Island to Emperor Hongwu, an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Jeju's ownership is in Goryo dynasty, and instead sometimes offered tribute to horse. Goryo dynasty-Ming dynasty relations was deteriorated rapidly due to last period of King Gong'min and Early King Wu. Goryo dynasty-Ming dynasty relations improve middle King Wu, Emperor Hongwu once again confirmed the ownership of Jeju Island in Goryo, and succeeded it to the Joseon dynasty and now. This research examined Korea-China relations focusing on Jeju Island

Key-words: Goryo dynasty, Ming dynasty, Jeju Island, Goryo dynasty-Ming dynasty relations, King Gong'min, Emperor Hongwu

* SOONCHUNHYANG University, Sinology, Assistant Professor

102 탐라문화 제60호

논문투고일: 2018. 12. 17.

심사완료일: 2019. 02. 07.

게재확정일: 2019. 02. 07.

K C I